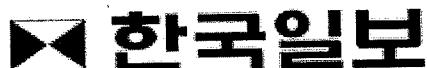


koreatimes.com




## “양육비 깎아달라” 조정 요청 쇄도

입력일자: 2010-03-19 (금)

경기침체로 실직·감봉

LA법원 신청 3배 급증

불경기로 실직하거나 감봉을 당해 양육비 인하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LA카운티 수페리어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양육비 인하 조정 심리 케이스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실제로 심리를 받는 케이스 외에도 하루에 수백통의 양육비 인하 조정을 문의하는 전화가 법원에 쇄도해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8년째 한달에 500달러씩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김모씨도 지난달 이혼한 딸이 기르고 있는 딸의 양육비 인하 조정 심리를 신청했다. 얼마 전에 한달 수입이 6,000달러에 이르던 자영업을 매출 부진으로 정리하고 월급 3,000달러의 직장에 취직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양육비 조정을 위해서는 수입의 구체적인 변동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고 정부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심리를 거쳐 양육비 액수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신혜원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불경기에 양육비 인하 조정 신청 증가는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다”며 “수입이 감소하거나 실직했다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양육비를 줄여서 지급했다가는 추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추징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양육비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조정은 주는 측과 받는 측 모두 임금 변동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양육비를 받는 측이 자신의 수입이 감소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에 양육비 인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양육비 조정을 스스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문성이 결여돼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법원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미 LA카운티 수페리어 법원이 대대적인 감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양육비나 양육권 등 가정법에 관련된 법적 절차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